

정책연구 2005-03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태규 · 김현종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1판1쇄 인쇄/2005년 12월 15일

1판1쇄 발행/2005년 12월 20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노성태

편집인 · 노성태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

ISBN 89-8031-364-0

값 4,000원

# 목 차

---

<요 약> .....	5
I. 논의의 배경 .....	15
1. 금산법 제24조의 개요 및 변천과정 .....	15
2. 최근의 금산법 개정 논쟁의 배경 .....	15
II.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문제점 .....	18
1. 금산법 개정안 비교 .....	18
(1) 재경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8
(2) 박영선 의원 안의 주요 내용 .....	19
(3) 열린우리당 당론 .....	21
(4) 민주노동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2
2. 소유한도 초과분 강제매각의 법리적 문제점 .....	23
(1)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소지 .....	23
(2)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인한 위헌소지 .....	26
III. 금산법에 의한 금·산 분리의 문제점 .....	29
1. 중복·과잉 규제 .....	29
2.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 .....	31
IV.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	34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	34
(1) 상호출자금지제도 .....	34
(2) 지주회사제도 .....	35

(3) 부채비율 200% 정책 .....	36
(4) 출자총액제한의 도입, 폐지 및 재도입 .....	36
2. 금산법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38
(1) 금산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변화 .....	38
(2)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법의 문제점 .....	40
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	43
(1) 직접규제의 배제 .....	43
(2) 시장의 자율적 감시제도 활성화 .....	43
(3)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	43
 V. 결 론 .....	 45
 부 록 .....	 49

## <요 약>

1. 소유한도 초과분의 강제처분은 위헌소지 내포
  -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침해
  -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2. 금산법 제24조의 문제점
  - 중복·과잉 규제
  - 금융규제의 기본원리에 배치
3. 금산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 순환출자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 존재
  - 금융계열사간 합병 등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M&A의 위협상승 등으로 보수적 경영행태 고착 우려
4. 대안
  -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 활성화

### 1. 소유한도 초과분의 강제처분은 위헌소지 내포

#### □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침해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할 때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고 또한 여기서 규율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임.
-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위반을 이유로 주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인 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임.

○ 대법원은 판례<sup>1)</sup>를 통하여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규정

—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금산법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임.

○ 금산법 부칙 3조에 의해 금산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은 인정

□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 한편, 금산법 제24조의 단속규정으로서의 신뢰가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에서는 금산법 위반으로 기대(신뢰)되는 이익은 부당한 이익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취득이 사회통념상 범죄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정 목적에 의해 위법화된 것에 불과

—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은 금융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지배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의결권 제한으로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

---

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소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 선고 2003다5337 판결 참조)

## 2. 금산법 제24조의 문제점

### □ 중복·과잉 규제

- 금·산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저해, 불공정 경쟁 등의 부작용은 기존의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금산법 제24조를 통한 추가적 규제는 중복·과잉 규제
  -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는 개별 금융법에서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은 이미 관련 금융법에서 규제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부당내부거래 금지) 조항에 의해 제재
  -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라는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

### □ 금융규제의 기본원리에 배치

-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규율대상 금융기관으로 거의 모든 금융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

규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 이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관련법상의 자산운용규제 등이 금산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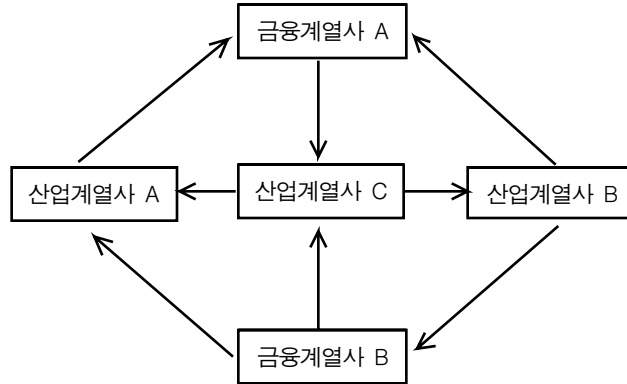
### 3. 금산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 순환출자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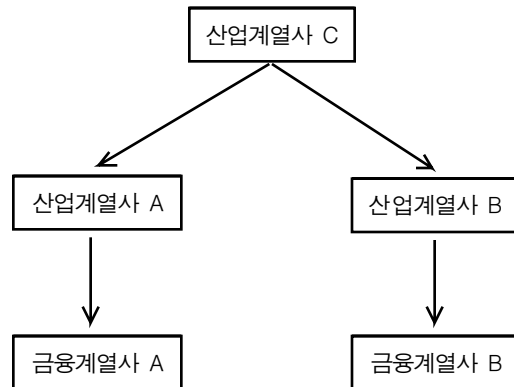
-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정부의 정책 및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변화·발전되어 온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산물임.
  - 상호출자 전면 금지, 지주회사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200%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이에 순응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순환출자구조도 이러한 정책변화의 산물임.
-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주식강제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집단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간 출자관계가 오히려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
  - 금산법은 산업계열사간 출자구조 단계 아래에 금융계열사간 출자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기업집단 내 출자구조를 일면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금산법의 본래 취지는 기업집단이 지분매각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출자구조를 <그림 2>와 같이 단순한 출자구조로 변경시킬 것을 기대



<그림 1> 금산법 개정 이전의 출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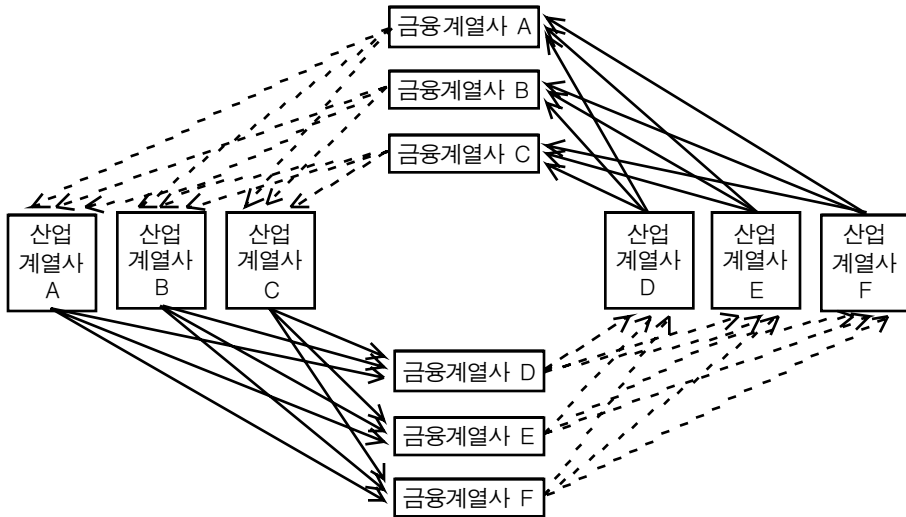
<그림 2> 금산법 개정이 기대하는 구조



○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가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은 <그림 3>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할 유인도 보유

— 이 경우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집단의 노력이 또 다시 다른 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금산법도 과거의 여러 형태의 정책과 같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책실험이 될 수 있음.

<그림 3> 금산법 개정으로 인한 출자관계의 변화 예시



주: 점선은 5% 미만의 출자지분을 의미

□ 금융계열사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권, 투신 등의 금융계열사를 합병하여 종합투자금융회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나,
- 금산법에 의해 각각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회사 지분이 기업합병으로 급감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금융계열사간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더욱 가능성 존재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M&A의 위협상승 등으로 인해 보수적 경영행태 고착 우려

- 국내기업은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아 금산법은 국내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

-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력 약화는 경영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어 기업입장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 4. 대안

□ 금산법과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 금산법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형시키기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에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등의 현존하는 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원인이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촉진을 유도해야 함.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 I. 논의의 배경
  - II.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문제점
  - III. 금산법에 의한 금·산 분리의 문제점
  - IV.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 V. 결 론
- 부 록



# I. 논의의 배경

## 1. 금산법 제24조의 개요 및 변천과정

- 1997년 1월 기존의 ‘금융산업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로 대폭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24조가 신설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
  - 동일계열 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 취득 시, 동일계열이 아닌 타 회사의 경우 20% 이상 취득 시 승인이 필요
-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산법 24조의 승인주체가 ‘재정경제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뀜.
- 금산법 제정 당시에는 법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었으나 2000년 1월 신설
  - 금융기관의 임원 등이 금산법 24조 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7조).
  - 금융기관이 금산법 또는 금산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8조).

## 2. 최근의 금산법 개정 논쟁의 배경

- 2004년 4월 금감원의 일제조사로 금산법 제24조 위반상태인 10개의 금융기관 적발

- 금산법의 벌칙 규정이 개인에 대한 벌칙이나 기관 과태료에 그쳐 위법상황을 시정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재경부 및 열린우리당(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제시
- 현재 승인 없이 보유중인 한도초과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안 사이에 차이점 노정
  - 정부안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타 회사 주식은 법에 의한 한도에 상관없이 인정하고 법 제정 이후 승인 없이 취득한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하자는 것이 주 내용
  -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안은 주식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승인 없이 취득한 초과보유분은 모두 강제매각(5년 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5년 7월 5일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과 법 제정 이후 벌칙조항 신설 이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은 소급입법 등을 포함한 위헌소지가 많다는 비판 대두
  - 정부안은 소급입법 등의 위헌소지를 피한 입법이나 강제매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
- 한편 2005년 10월초 청와대는 현재 법 위반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금산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 지분은 인정하고 법 시행 이후 초과취득한 지분은 강제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 민주노동당도 별도의 금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05년 10월 13



일)을 제출

○ 주식취득의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법 위반 상태인 한도초과분을 2년 내에 강제매각하는 것이 주 내용

— 수차례의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안(박영선 의원 안)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함.

— 2005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강제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

## II.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문제점

### 1. 금산법 개정안 비교

#### (1) 재경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한도초과분에 대한 처리와 소유한도

- 법 시행 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비율이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소유분을 인정하고 소유한도를 법 시행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간주(개정안 부칙 4조의 2항)

##### 법 제정 이후 승인 없이 취득한 한도초과분

- 법 제정 이후 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종전규정(별칙/과태료)에 따라 처리하되,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금지(개정안 24조의 7항 및 부칙 5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후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 승인 신청토록 함(개정안 24조의 4항).

##### 앞으로의 승인 없이 한도위반 주식에 관한 처리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개정안 24조의 7항)

—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조치권을 부여(개정안 24조의2)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수정 요구
-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 요구
-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한도 초과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 주식처분명령 미 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개정안 24조의3)

- 주식처분기한 경과 후 처분 시까지 매 1일당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승인받은 금융기관의 추가적 주식취득

— 일단 승인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금감위가 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는 다시 승인을 얻도록 함(개정안 24조 5항).

(2) 박영선 의원 안의 주요 내용

□ 현재 법 위반 상태인 한도초과분에 관한 처리

— 법 제정 이전, 이후에 상관없이 현재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한 소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금지(개정안 24조의2)

-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계획 제출 및 수정요구

-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 한도초과분에 대해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야 함(개정안 부칙 2항).
- 주식처분명령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개정안 29조)
  - 주식처분기한 경과 후 처분 시까지 매 1일당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후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일정기간 내 승인 신청토록 함(개정안 24조 4항, 재경부 안과 동일).

금융기관의 추가적 주식취득

- 현행법은 계열사의 경우는 5%를 넘을 경우 한 번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계열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25%를 초과할 때, 33%를 초과할 때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개정안 24조 5항)

한도초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 금감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간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할 수 있음 (개정안 24조 7항).

### (3) 열린우리당 당론

#### □ 분리대응 안

- 구체적인 법률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금산법 시행 이전·이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을 분리하여 제재
-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강제매각을 주 내용으로 함.
- 강제매각 시 유예기간과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박영선 의원 안의 형태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쟁점에 대한 금산법 개정안 비교

구분	정부안	박영선 의원 안	열린우리당 당론
법 제정 이전 취득한 한도초과 보유분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주식의 효력을 인정</li> <li>○ 소유한도를 법 시행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하고 단계적 매각추진(5년 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li> </ul>
법 제정 이후 승인 없이 한도초과한 보유분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하고 단계적 매각추진</li> </ul>
차후(법 개정 이후) 승인 없이 한도초과 보유분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하고 매각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동</li> </ul>

(4) 민주노동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 안과 대동소이

-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주식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현재 소유한도 초과분은 강제매각한다는 점에서는 열린우리당 안과 차이가 없으나 매각의 유예기간을 2년 내로 하고 있음(개정안 부칙 제2조).
- 또한 금산법 24조의 “주식소유한도”를 “주식보유한도”로 바꾸고 “보유”의 개념을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24조 1항).

## 2. 소유한도 초과분 강제매각의 법리적 문제점

- 현재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근본원인은 애초의 금산법 24조에 대한 입법 미비에 기인함.
  - 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었으며,
  - 법 제정 이후 상당기간 법 위반에 대한 별칙규정도 없었으며 정부의 법 집행의 적극적 의사도 없었음.
- 입법 미비 등으로 법의 실효적 집행이 미약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상태에서 여당의 법률개정을 통한 주식의 강제처분 등을 포함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소급입법 등의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논란을 촉발시킴.

### (1)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소지

#### □ 법률 개정으로 기존 주식의 강제처분은 소급입법

-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가지는 입법”을 의미
- 따라서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단, 부진정소급입법도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이익이 신뢰보호의 이익보다 클 경우에 한하며 그 규율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함에 있어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고 또한 여기서 규율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임.
- 또한 대법원은 판례<sup>2)</sup>를 통하여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인 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임.
- 특정규정 위반으로 해당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때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라 하며,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은 인정하되 그 행위에 대해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함.

<참고> 대법원 선고 2003다5337 판결 요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사의 부실을 통하여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승인기준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규제될 필요가 없는 행위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단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금산법의 승인대상이 아님은 물론 취득 당시의 지분율을 소유한도로 인정

— 새로운 법률규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한도초과분은 금산법의 승인대상이 아님.

○ 금산법 부칙 3조는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칙

제3조(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보험업법에 의거,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하고(855%) 있었으며 당시 보험업법상 동일회사 주식 소유 한도는 10%여서 보험업법상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금산법 부칙 3조에 의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기본권에 대한 효력은 폭 넓게 인정하고 그 제약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법률의 기본원리이므로 부칙은 당연히 법 시행 전 소유분을 승인 의제하는 것임.

— 부칙에 의해 금산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은 인정되므로 금산법 개정안에서도 법 제정 당시의 지분을 소유한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열린우리당 당론인 법 제정 이전 취득한 한도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합법적인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침해이므로 위헌임.

— 일부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의 자산운용규제와 금산법의 소유한도규제(기업결합제한)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보유분이 해당 금융업법상에서 승인이 필요 없었다 할지라도 금산법의 승인대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금산법 부칙 제3조는 명시적 인가·승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개별 금융법상에서 승인이 필요 없었던 지분은 명시적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산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 따라서 삼성생명의 금산법 제정 이전에 보험업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금산법에 의한 승인대상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법이라고 주장

—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만약 개별 금융업법의 자산운용규제와 금산법의 소유한도규제가 그 목적이 달라 별개의 규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애초부터 부칙에 의한 경과조항이 필요가 없음.

- 개별 금융업법의 자산운용 한도 이상 보유한 지분도 해당 금융법에 의한 승인만 받으면 금산법의 소유한도규제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이 경우도 자산운용규제에 의한 승인이 소유한도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법과 금산법의 목적이 달라 별개의 규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

## (2)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인한 위헌소지

□ 금산법 시행 이후 승인 없이 한도 초과한 소유분은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

— 금산법 시행 이후 승인 없이 소유한도를 초과한 지분에 대한 처리도 신

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일정한 법률의 효력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신뢰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기대이익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하에 보호되는 사익이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 양자간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i) 목적의 정당성 (ii) 방법의 적정성 (iii) 피해최소성 (iv)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 금산법 제정 당시에는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도 않았고 2000년 1월에야 벌칙조항이 도입되었으며, 그 내용도 주식강제처분과 같은 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4조에 대한 단속규정으로서의 신뢰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

— 일부에서는 금산법 위반으로 기대(신뢰)되는 이익은 부당한 이익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취득이 사회통념상 범죄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정 목적에 의해 위법화된 것에 불과

○ 살인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며 살인범이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로 기대하는 신뢰이익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

—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대량의 주식강제매각의 경우 매입자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헐값매각(Fire Sale)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업가

치에 영향을 주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

-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그 가격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시장에서 매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의 수도 제한적이어서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큼.
-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므로 주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강제매각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 대법원의 판결이 적시하듯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 금산법 제24조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일정 한도 이상 취득 시에만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음.

- 즉 강제매각은 금융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지배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의결권 제한으로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Ⅲ. 금산법에 의한 금·산 분리의 문제점

#### 1. 중복·과잉 규제

□ 금·산 결합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개별 금융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음.

— 금·산 결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저해, 공정 경쟁 저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집중 등을 들어 금산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금산법 시행령에서는 한도초과 보유분에 대한 승인기준으로 (i) 당해 주식소유가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ii)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개별 금융법에서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특히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부당내부 거래 금지) 조항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음.

<표 2>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계열 주식보유한도

구분	신용공여	주식보유
은행	○ 자기자본의 25%와 출자비율 중 적은 금액(은행법 35조의2)	○ 자기자본의 1%(은행법 35조의3)
보험	○ 자기자본의 40%와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보험업법 106조)	○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좌동)
증권	○ 금지(증권거래법 54조의3)	○ 자기자본의 8%(시행령 37조의3)
투신	○ 금지	○ 계열사 발행주식: 각 신탁재산의 10%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6조) ○ 계열사 발행 우가증권: 전 계열사의 투신사 출자비율(상동)
상호저축	○ 금지	○ 자기자본의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9조)
여전	○ 자기자본의 100%(여전업법 50)	
종금	○ 자기자본의 15% (종금업법시행령 9조의3)	○ 자기자본의 5% (종금업감독규정 17조)

-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라는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금·산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은 기존의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의해서 이미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금산법은 중복·과잉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2.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업종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관련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

— 금산법 제24조의 규율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 고객의 자금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계열회사 지배력 확장을 막는 것을 금산법의 중요한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 이외에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 또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자금조달의 대부분이 타인자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고 이 때문에 채권자 보호 장치가 더욱 필요하며,

— 따라서 금산법의 규율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수신기능의 유무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

—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금융규제에서 수신기능의 유무는 채권자 보호를 포함한 여타 규제의 폭과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임.

— 일반적으로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정보력 및 분석력이 미약한 개인들이며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고객이익 침해행위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이러한 이유로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채권자 보호 장치가 강함.

○ 통상적으로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여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로 이들은 정보력 및 분석력이 뛰어나며 자금수요자에 대해 사전·사후적 규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자금공여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며 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 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은행의 부실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 은행은 자산과 부채간의 만기 비대칭성이 크므로 작은 충격에도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해 도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은행을 통해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도산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비대칭성이 크지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음.



- 단순히 타인자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위치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함.
  - 제조업체가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대우사태, 미국의 Penn Central 철도회사 도산 등).
  -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경영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지 않음.
  
- 금융관련법은 이러한 개별 금융기관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으며 금산법 제24조는 이러한 금융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임.

## IV.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 과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와 이에 대한 기업집단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의 규제 순응과 정부의 신규 규제도입의 반복이었음.
- 정부는 대기업집단을 정책실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책의 혼선을 유발

#### (1) 상호출자금지제도

##### □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전면 금지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

- 이미 상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하여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도입
  -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당시 이미 상법 제342조의2에서는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4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는 출자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sup>3)</sup>
  -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출자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었던 상황<sup>4)</sup>

3) 상법 제342조의2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은 2001년 7월 24일 개정으로 40% 이상의 경우에서 50% 이상의 경우로 완화되었다.

4) 상법 제362조 제3항 참조

— 30대 기업집단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상호출자의 금지제도를 수용하면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출자관계를 형성·발전

○ 30대 기업집단에 대하여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었으므로 외환위기 이후 30대 기업집단은 출자관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영권이 불안정해졌을 경우 상호출자관계 대신 순환출자구조를 형성

—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과 민영화기업인수 등으로 인하여 순환출자구조가 증가되었는데, 최근에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금지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2) 지주회사제도

— 정부는 30대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

○ 30대 기업집단은 지주회사 금지제도로 인하여 지주회사와는 다른 형태로 출자관계를 형성·발전

— 1999년 2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지주회사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허용

○ 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에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OECD, IBRD 등이 외자유치상의 장점,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촉진 등 구조조정 차원의 순기능이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동일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왔던 일본에서 1997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사례 등이 지주회사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지주회사제도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집단들에 지주회사제도의 수용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

○ 30대 기업집단은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시킨 이후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다시 허용할 때까지 10여 년간을 지주회사체제와는 전혀 다른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는데,

○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도록 기업집단에 권유하고 있는 중

### (3) 부채비율 200% 정책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주채무계열 채무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30대 기업집단들 대부분이 포함)으로 하여금 200% 이하로 감소시키도록 하는 정책 추진

○ 기업집단들은 단기간 이내(2년간)에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여 지배주주들의 지분이 급감

— 그러나 현재 지배주주의 지분 감소는 소유지배 괴리도를 증대시켜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논의로 전도

○ 따라서 부채비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감소시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이 현재 비난받는 상황

### (4) 출자총액제한의 도입, 폐지 및 재도입

—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기업집단 내 무리한 계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도입

- 규제의 도입 당시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 1994년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에서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 조정

—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1998년 2월 제6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폐지

-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폐지는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적대적 M&A의 허용 등 다양한 개혁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될 수 있으며 경영권 방어에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어 결정된 정책
- 30대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폐지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출자를 증대

— 규제의 폐지 이후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규제를 재도입하였으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집단의 경우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

-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폐지 이후 30대 기업집단 내 내부지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도 폐지의 부작용을 이유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규제를 재도입
-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폐지 기간 동안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증대하였던 기업집단은 현저히 증대된 소유지배 괴리도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 벗어나기가 요원해짐.

## 2. 금산법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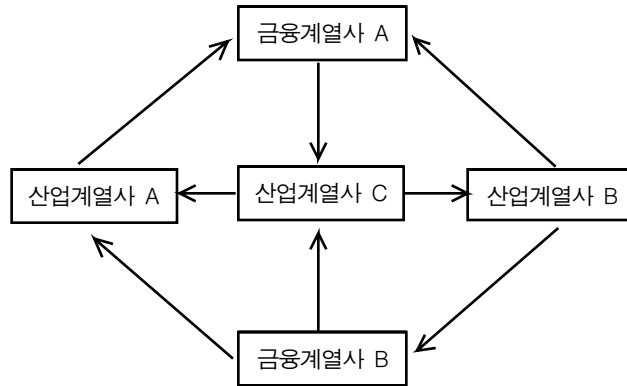
### (1) 금산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변화

- 대법원 판결은 금산법의 취지가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sup>5)</sup>
  -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산업계열사의 지분을 5% 미만으로 소유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보고 인정하고 있는 대신 금융기관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5% 이상의 출자를 금지
  -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산업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 이러한 취지의 금산법은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에 있어서 금융계열사를 출자구조의 마지막 고리에 배치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작용
  - 금산법은 산업계열사간 출자구조 단계 아래에 금융계열사간 출자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기업집단 내 출자구조를 일면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금산법의 본래 취지는 기업집단이 지분매각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출자구조를 <그림 2>와 같이 단순한 출자구조로 변경시킬 것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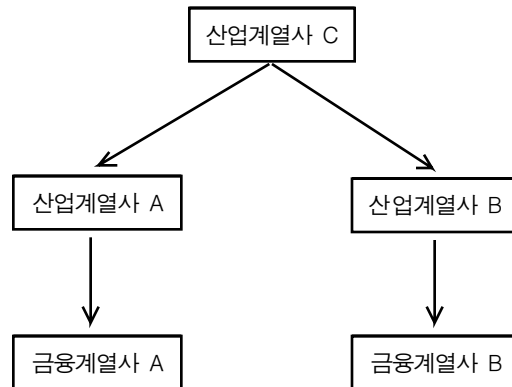
---

5) 대법원 선고 2003다5337 판결요지 참조

<그림 1> 금산법 개정 이전의 출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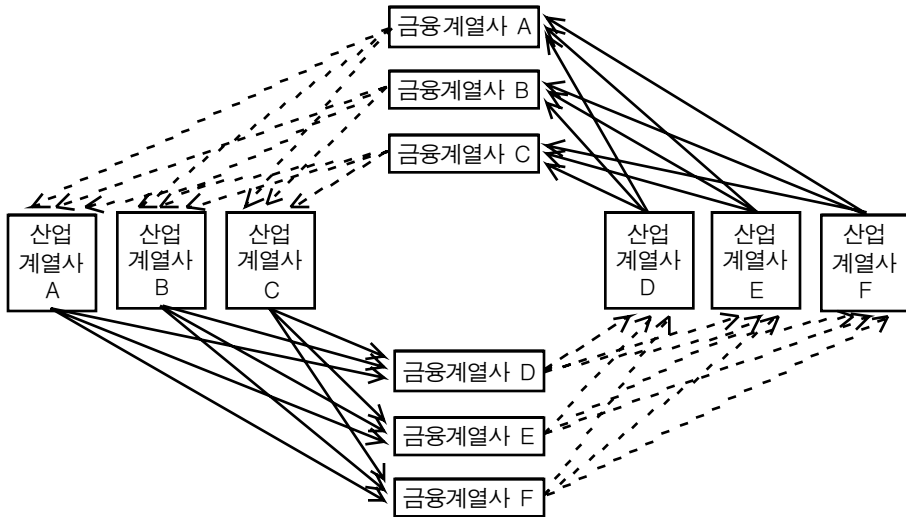
<그림 2> 금산법 개정이 기대하는 구조



—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가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업집단은 <그림 3>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지배 구조를 형성할 유인도 보유

-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가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경우 <그림 3>처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금산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집단의 출자관계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

<그림 3> 금산법 개정으로 인한 출자관계의 변화 예시



주: 점선은 5% 미만의 출자지분을 의미

(2)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법의 문제점

□ 기업집단에 대한 또 다른 정책 실험이라는 우려

— 금산법은 시장자율적 기능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직접적 규제방안

○ 금산법은 산업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통해 금융계열사의 부실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산법의 금융계열사의 부실화 방지효과보다 금산법 적용에 따른 기업집단의 효율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 과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처럼 규제를 수용하기 위한 기업집단의 노력이 또 다시 다른 규제를 불러올 우려



-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 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기업집단이 규제에 적응하면 또 다른 형태가 규제가 부과되는 식의 과정을 밟아 왔음.
- 이 같은 잦은 정책변화로 기업은 높은 정책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것임.

— 결국 금산법도 과거 여러 형태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팽배

□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계열사간 결합을 제한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재정경제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증권사, 선물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기능을 통합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할 계획으로 발표되었는데,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증권사, 선물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지만,
- 한편으로 산업계열사에 대해 3개 금융계열사들이 총 15% 미만까지 출자가 가능하였으나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됨으로써 금산법에 따라 출자지분을 5% 미만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

— 구체적 사례로서 삼성그룹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종합금융투자회사로 합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산법은 이러한 합병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1일 현재 삼성증권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삼성테크윈의 지분을 각각 1.95%와 0.12% 보

유하고 있어 종합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경우 삼성테크윈에 대한 지분은 2.07%로 상승(삼성선물은 삼성테크윈의 지분을 무보유)

-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투자신탁운용이 별개의 회사로 존속할 경우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삼성테크윈의 주식을 각각 3.04%, 4.99% 및 4.87%까지 더 보유할 수 있어 3개사는 삼성테크윈의 지분을 총 12.90%만큼 추가적으로 더 보유할 수 있는 반면, 3개사가 통합되면 그 통합회사는 2.92%만큼만 삼성테크윈 지분을 삼성테크윈 지분을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유하려 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제약에 직면

#### □ M&A의 위협상승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 국내기업은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아 금산법은 국내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
- 삼성생명 지분매각에 따른 M&A의 가능성
  - 삼성생명의 지분 중 5%를 넘는 2.24%를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주주 동일측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3.81%가 되어 15% 미만이 됨.
  - 소비자자산운용의 경우 14.96%로 SK그룹에 대하여 경영권 위협을 가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15% 미만의 동일측 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M&A 위협증대로 볼 수 있음.
- 일부에서는 금산법 개정으로 인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력 약화는 경영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어 기업입장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 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 (1) 직접규제의 배제

- 정부는 금산법과 같은 직접규제를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것이 중요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부실화와 공정경쟁, 총수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법조항으로 규제하는 제도
  - 이러한 직접규제는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구축(Crowding Out)하는 역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전략변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

#### (2) 시장의 자율적 감시제도 활성화

-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
-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견제 유인을 높이며, 공시제도 및 분식회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

#### (3)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 금융시장의 경쟁은 금융계열사의 경영조직과 사업구조를 효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금융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업 간 및 기업집단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

-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원인
-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직접 산업계열사에 출자하여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유인을 보유하게 됨.

—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공정경쟁에 효과적

## V. 결 론

### □ 위헌소지 있는 금산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할 때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고 또한 여기서 규율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임.
-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위반을 이유로 주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인 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임.
- 한편, 금산법 제24조의 단속규정으로서의 신뢰가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은 금융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지배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의결권 제한으로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 □ 금산법 제24조는 중복·과잉 규제이며 금융규제의 기본원리에도 벗어나므로 존재의 의의 상실

- 일부에서는 금·산 결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산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 이미 기존의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산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금산법은 중복·과잉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규율대상 금융기관으로 거의 모든 금융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 규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관련법상의 각종 규제 등이 금산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적으로 금산법 제24조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 금산법으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존재

-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정부의 정책 및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변화·발전되어 온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산물임.
-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주식강제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집단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지배 구조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간 출자관계가 오히려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
- 이 경우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집단의 노력이 또 다시 다른 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금산법도 과거 여러 형태의 정책과 같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책실험이 될 수 있음.

□ 금융계열사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권, 투신 등의 금융계열사를 합병하여 종합투자금융회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나
- 금산법에 의해 각각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회사 지분이 기업합병으로 급감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금융계열사간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더질 가능성 존재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M&A의 위협상승으로 인해 보수적 경영행태 고착 우려

- 국내기업은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아 금산법은 국내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
- 일부에서는 금산법 개정으로 인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력 약화는 경영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어 기업입장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 금산법과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 금산법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형시키기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에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등의 현존하는 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원인이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촉진을 유도해야 함.



## 부 록

<부표 1> 재경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24條(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p> <p>① (생략)</p> <p>②第1項에서 “企業集團”이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集團을 말한다.</p> <p>③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第24條(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소유의 한도를 정하여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승인을 얻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⑦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 한도(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소유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주식소유 비율)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p>

<p>&lt;신 설&gt;</p>	<p>할 수 없다.</p> <p>⑧제1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lt;신 설&gt;</p>	<p>제24조의2(시정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 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li> <li>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li> <li>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li> <li>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li> <li>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li> </ol>
<p>&lt;신 설&gt;</p>	<p>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p> <p>④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p>

<p>第24條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措置, 金融機關의 清算 및 破産등에 관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 등의 근거가 되는 法律과 商法·非訟事件節次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따른다.</p> <p>第27條(罰則) 金融機關의  임원,  관리인 또는  清算人(이하 “金融機關의  任員등”이라 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li> </ol> <p>第28條(過怠料) ①金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에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각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p> <p>第24條의4(다른 法律과의 관계)----- ----- ----- ----- ----- -----상법.-----비송사건절차법. ----- -----</p> <p>第27條(罰則)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제24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li> </ol> <p>第2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li> <li>2.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li> <li>3.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li> <li>4.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때</li> </ol>
---	---

<신 설>	5.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신 설>	6.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신 설>	7.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8.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9.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병합을 한 때
<신 설>	10.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1. 제12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3.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4.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때
<신 설>	15. 제24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때
<신 설>	16.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7. 제2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

<p>② ~ ④ (생략)</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 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⑥ (생략)</p>	<p>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비송사건절차법 ----- -----</p> <p>⑥ (현행과 같음)</p> <p>- 관련 부칙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시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제24조 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정한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식소유비율보다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아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높아진 주식소유비율을 제24조 제5항 전단</p>
---	---

	<p>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정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의결권 제한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②제2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257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비율이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동법 시행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p> <p>제5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	---

**<부표 2> 박영선 의원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24條(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p> <p>①金融機關 및 그 金融機關과 같은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이하 “同一系列 金融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金融機關의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 의하여 認可·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株式所有가  相關市場에서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第24條(다른 會社의 株式所有限度)</p> <p>①-----</p> <p>-----</p> <p>----- 제6항의 규정</p> <p>-----</p> <p>-----</p> <p>-----</p> <p>-----</p> <p>-----</p> <p>1. ~ 2.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p> <p>-----</p> <p>-----</p> <p>-----</p> <p>-----</p> <p>-----</p> <p>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식소유의 한도를 정하여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승</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li> <li>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li> </ol> <p>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이하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주식소유가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li> <li>2.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li> <li>3. 금융기관의 위험성, 자산규모,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li> </ol> <p>⑦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p>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4條의2 (생 략) 제27조(罰則) 金融機關의 임원, 관리인 또는 清算人(이하 “金融機關의 任員 등”</p>	<p>기업간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⑧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p> <p>제24조의2(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계획 제출 및 수정요구</li> <li>2.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li> <li>3.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li> <li>4.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li> <li>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li> </ol> <p>②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주식소유 한도가 있는 경우는 당해 주식소유비율)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제24조의3 &lt;현행 제24조의2와 같음&gt; 제27조(벌칙) ----- -----</p>
---	--

<p>이라 한다)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3. (생 략)</p> <p>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p> <p>&lt;신 설&gt;</p>	<p>----- ----- -----.</p> <p>1.~ 3. (현행과 같음)</p> <p>4.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29조(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가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p> <p>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내지 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관련 부칙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p>
--	--

	<p>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p>
--	--